

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3. 9. 14.)



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를 국내공장 25만원·해외공장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하며, 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,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하고 있다.

- 산업통상자원부는 9.15.(금)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·공포한다.
-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·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.
-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·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.
- 대상 품목은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, 어린이 놀이기구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,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.
-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“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·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, 안전인증·안전확인·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❖ [참고]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개요

■ 제도 개요

- (규정)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『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』 시행 (‘14.6.3. 제정, ’15.6.4 시행)
- (대상)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
*약사법, 식품위생법, 화장품법 등 타법에서 소관하는 품목은 제외
- (관리체계)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제조(수입)자가 시장출시(통관) 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KC 마크를 표시

<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개요 >

구 분	대상 품목	관리방법	위해도
안전인증 (4개 품목)	어린이용 물놀이기구, 어린이 놀이기구,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, 어린이용 비비탄총	제품검사 + 공장심사	높음
안전확인 (16개 품목)	유아용 섬유제품,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, 유아용 의자, 완구, 유아용 삼륜차,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, 어린이용 자전거, 학용품, 유모차, 유아용 침대 등	제품검사 (지정 시험·검사기관)	↓ 낮음
공급자적합성확인 (14개 품목)	어린이용 가죽제품, 아동용 섬유제품, 어린이용 장신구, 어린이용 안경테, 어린이용 우산·양산,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,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등	제품검사 (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 시험·검사기관)	

- (절차) 안전관리 수준에 따른 KC 마크 표시
 - (안전인증) 제조·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후 KC 마크를 표시(2년 단위 정기 검사)
 - (안전확인) 제조·수입자가 시험·검사기관을 통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 마크를 표시(유효기간 5년)
 - (공급자적합성확인) 제조·수입자가 자체 또는 제3자 시험·검사 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KC 마크를 표시